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24.1.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규모별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심사 제외 대상 사업 등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후 재심사 실시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근거를 상향조정함에 따른 내용 삭제(제3조제1항 및 제2항)

-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규칙 제3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규모에 따른 자체

심사, 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등 투자심사 실시 주체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의 재난예방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민간투자사업, 소방장비 구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4조의2)

- 1) 중앙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21명 이내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2) 내실있는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 체계화(안 제4조의3)

- 1) 현행 영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타당성조

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투자심사 면제 협의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자체심사 후 재심사 실시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

1) 현행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체심사를 받은 사업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시 자체 재심사를 이행하고 있음

2) 자체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재심사는 시·군·구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시·도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

마. 전문기관 중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3항)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심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심사 사업은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안 제11조의4)

1)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법 상 타당성조사 대상이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조사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에 한계

- 2)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로, “투자심사”를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로, “같은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의2제3항”으로,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투자심사 기준 및 절차

제2조의 제목 “(투자심사기준)”을 “(투자심사 기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제5항에 따른 투자심사 의뢰서는”으로,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조제1항제3호의”를 “영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으로,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를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로 한다.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 의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시·군 및 자치구, 시·도의 청사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본청 및 의회청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1조제4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둔다”를 “두고,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1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심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로 본다.

⑧ 위원회는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투자심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1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라 투자심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소요자금 조달,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해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자심사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결

과를 따라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을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제4호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를 “법 제37조제4항의 투자심사 결과의”로 한다.

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의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이하 “재심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본문 중 “30퍼센트”

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자체심사 대상 사업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는 시·도(재심사 요건 충족 시 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지출비율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 “투자심사결과”를 “투자심사 결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투자심사결”을 “투자심사 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를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심사결”을 “투자심사 결”로, “판정된”을 “통보된”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

제10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절차)”를 “(타당성조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로,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타당성조사 의뢰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타당성 조사가”를 “타당성조사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계약 등)”을 “(타당성조사 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타당성 조사”를 각각 “타당성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제12조제3항 중 “타당성 조사에”를 “타당성조사에”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타당성 조사 계약”을 “타당성조사 계약”으로, “타당성 조사에”를 “타당성조사에”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타당성 조사 방법)”을 “(타당성조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로,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타당성 재조사)”를 “(타당성재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재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를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로, “타당성 조사를”을 “타당성조사를”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를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총사업비가”를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 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법 제37조의2 제3항----- 타당성조사----- -----. 제2장 투자심사 기준 및 절차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

나. 삭제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
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
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
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
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
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
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
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
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
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사업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
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
대상사업

4.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
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
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사업

7.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
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
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
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
업

8.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
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
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
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
(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
비 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
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
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
지·보수 사업

9.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
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10.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1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신설>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해당 -----

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단서 삭제>

③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 의뢰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

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시·군 및 자치구, 시·도의 청사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본청 및 의회청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
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

⑥ 제5항에 따른 투자심사 의뢰
서는 -----

제출

자심사 대상사업이 <u>제3조제1항 제3호의</u>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u>8월 25일까지</u>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u>단위사업계획서</u> 2. <u>투자사업우선순위표</u> 3. <u>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u> 4. <u>제3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u> 5. <u>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u> 6. <u>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u>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u>영 제41조제4항에 따라</u> 행정안	----- <u>영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u> ----- ----- ----- ----- ----- <u>8월 25일까지</u>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u>법 제37조제1항</u>-----
---	--

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생략)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두
고,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30명

③・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연임 _____

⑥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심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⑧ 위원회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 제8항-----

--.

제4조의3(투자심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1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라 투자심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소요자금 조달, 재정·경제적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효율성 등에 대해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자심사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

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타당성조사 -----

5.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7조제4항의 투자심사결과의 -----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재심사) ① -----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 7. (생략)

<신설>

----- 한다.(이하 “재심사”라 한다)

1. ----- 100
분의 30 -----

-----.

2. ~ 7.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자체심사 대상 사업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는 시·도(재심사 요건 충족 시 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재

<신 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지출비율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

투자심사 결과-----

-----.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 투자심사 결-----

-----.

② (현행과 같음)

③-----

----- 투
자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부적

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
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와 적정 또
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
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
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
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③·④ (생략)

<신설>

정으-----

-----.

④-----
----- 투자심사 결과-----
----- 통보된 -----

--.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
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
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장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

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 법 제37조의2

----- 타당성조사(이하 “타

당성조사”-----

-----.

1. (현행과 같음)

2. 타당성조사-----

② -----

----- 타당성조사 전문기

관(이하 “타당성조사 -----

-----.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

성조사-----

-----.

② -----

----- 타당성조사 전문기

관에 타당성조사-----

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 타
당성조사 의뢰서-----
----. -----

-----.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타당성조사 -----

-----.

④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타당성조사 -----

--. -----

1. -----
-- 타당성조사-----

2. -----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4. -----
타당성조사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③ ----- 타당성 조사에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

④ -----
----- 타당성조사 계약-----
----- 타당성조사에 -----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타당성재조사) ① -----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신 설>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3. ~ 6.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타당성 재조사-----
--.

1. -----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 타당성 조사를 -----

--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

1의2.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

--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세부기준 등) -----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u>타당성 조사</u>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u>타당성 조사</u>----- ----- -----.
--	--